

이사회규정

한세실업주식회사

제 1장 총 칙

제1조【목적】

이 규정은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적용범위】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【권한】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장 구 성

제4조【구성】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 1.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
 2. 상법 제542조18 제4항에 따른 사외이사추천위원회
 3. 지속가능경영위원회
 4. 경영위원회
 5. 내부거래위원회

제5조【의장】

- ① 이사회는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중 의장을 선임한다.
- ② 의장의 임기는 의장인 대표이사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을 유지할 때 까지로 한다.
- ③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 만약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아닌 대표이

사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이러한 순서에 의하여도 의장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집된 당해 이사회에서 이사들간의 협의로 정하기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【종 류】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【소집권자】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조 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의장 이외의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【소집절차】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본 항의 소집 통지는 문서, 전자메일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【결의방법】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- ⑤ 이사회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, 별도의 소집 통지는 아니할 수 있다.

제10조【부의사항】

- ①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 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4) 재무제표의 승인
 - (5) 정관의 변경
 - (6) 자본의 감소
 - (7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 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(10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11)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12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 - (13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 - (14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
 - (15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- (16) 이사의 보수
 - (17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への 보고
 - (18) 법정준비금의 감액
 - (19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 - 2. 경영에 관한 사항
 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2) 공동대표의 결정
 - (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- (4)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 - (6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
- (7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,개정 및 폐지 등
- (8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(9) 지점의 설치,이전 또는 폐지
- (10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1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6) 신주의 발행
- 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4) 자기주식의 소각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 또는 경업

5. 기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4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

제11조【이사회 내 위원회】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, 다만,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본 이사회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.이 경우,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
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 다만,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본 이사회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.

제12조【자료제출 요구권 등】

- ① 이사회는 부의된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취할 수 있다.

제13조【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】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【의사록】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

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5조【간사】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재정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6조【사외이사의 업무수행지원】

- ①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,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②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조 제1항에 정한 지원 또는 자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【개정일】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